



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15주제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범죄의 책임과 피해자의 인권

범죄자 인권의 여전한 강조 필요성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회복 필요성

국가와 사회의 범죄예방 책임

국가와 사회의 범죄피해 회복의무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1.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

범죄 예방의 의무와 보호입법 요청 : 형사입법

일반예방효과, 특별예방효과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2.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의무

근로능력의 감소나 상실과 경제적 곤란

국가의 경제적 구조의 필요성과 입법

기본권으로서 보장(헌법 제30조)

국가지원의 성격과 손해배상(국가배상)의 성격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1.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 (2010. 5. 14. 전부개정)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제7조제1항)

일시적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동조 제2항)

상담과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동조 제3항)

형사절차상의 권리(제8조 제1항)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제9조 제1항)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 범죄피해구조금(제16조 이하)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한 경우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소득과 수입을 기준, 부양가족과 생계 고려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2.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2) 구조금지급절차(제25조 이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신청 또는 직권으로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등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3.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010.5.14.제정)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구조에 필요한 자금 조성

법무부장관의 관리·운용 사항(제5조)

I.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II. 범죄피해자의
인권

III.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IV.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대두

피해의 회복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범죄책임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

토론

1.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해자인 범죄자에게만 있는가?
2. 국가가 왜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국가배상적 책임 또는 사회복지적 책임)